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개선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50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개선	3
【참고자료 1】 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14
【참고자료 2】 위험가중치 0% 적용 공공기관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
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Ⅲ. 검토의견: 유가증권¹⁾ 투자한도 규제 개선

□ 개정안은 지방채²⁾와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증권³⁾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호가목).

1) 현행법상 은행의 투자한도가 설정된 유가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주식), 파생결합증권, 기타(수익증권 등)으로 구분됨.

2)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금지업무) ----- ----- -----.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 -----. -----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u>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u>	가. ----- ----- -----. <u>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u>
<신설>	1)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신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서 「공공기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나. ~ 라. (생략) 2. ~ 6. (생략)	<u>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증권</u> 4)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5)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 은행은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운용하는 것 외에 유가증권 투자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다양화와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유가증권은 시장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위험자산이므로 「은행법」에서는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규제하면서⁴⁾⁵⁾, 자산의 장기운용에 따른 자금고정화를 방지하여 은행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을 초과하는 일부 채무증권⁶⁾,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규제하고 있음⁷⁾.

4) 정찬형·최동준·도제문, 「은행법강의」 제3판, 2015, 314쪽

5) 동일한 목적으로 「은행법」 제38조 및 시행령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규제 외에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적용대상]

구 분	채무증권						주 식	파생결합 증권	기 타 (수익증권 등)
	국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타			
3년 이하	-	-	-	-	-	-	E	-	-
3년 초과	-	-	A	B	C	D		F	G

주1. 「은행법」상 투자한도가 설정된 유가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주식), 파생결합증권, 기타(수익증권 등)로 구분됨.

주2. 통안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주3.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 현행법상 투자 제한 유가증권(A + B + C + D + E + F + G)

□ 이 중 ‘채무증권’에 적용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 38조제1호 및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⁸⁾은 은행이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에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① 국채⁹⁾, ②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¹⁰⁾, ③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8)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9) 「국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10)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11)에 따른 채권(정부보증 채권)은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¹²⁾

□ 그런데 1950년 「은행법」 제정시 채무증권 투자한도 규제가 마련된 이후 은행 자산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단기 유동성 규제, 2015. 1. 도입),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중장기 유동성 규제, 2018. 1. 도입) 등이 추가로 도입¹³⁾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만기(3년)에 따라 투자한도 규제 범위를 구분할 유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12) 위반시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은행법 제65조의3제9호), 위반한 은행의 임원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은행법 제68조제1항제4호), 「은행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음(금융위원회).

13)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2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 (2015. 1.부터 시행)

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2018. 1.부터 시행)

<참고>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한 지표로, 이 비율이 높으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고유동성 자산: 외화 유출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른 시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 지급준비금, 국채 및 국채에 준하는 채권, 비금융기업 회사채, 주택담보유동화증권 등이 이에 속함.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한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로, 시장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 도매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금융기관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중장기유동성비율로 불리기도 하며, 단기유동성비율(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함께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 핵심안 중 하나임.

인이 감소하였음¹⁴⁾.

○ 이에 감사원은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유가증권투자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환 만기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맞게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였음¹⁵⁾.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의 제외대상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방채¹⁶⁾’와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증권¹⁷⁾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4) 감사원,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2015

15) 이에 따라 정부는 2018. 12. 28., 유가증권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7872)을 제출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6) <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억원)

발행연도	지방채	
	발행금액	발행잔액
2020	77,972	247,199
2021	69,866	278,337
2022	54,398	291,389
2023	48,564	293,078
2024	43,696	286,644

주: 해당 연도말 기준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17) <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 현황 >

(단위: 억원)

발행연도	특수채	
	발행금액	발행잔액
2020	370,708	1,898,693
2021	396,946	2,019,825
2022	622,382	2,398,367
2023	558,537	2,676,088
2024	582,907	2,779,507

주: 해당 연도말 기준 특수채 발행잔액

<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 투자한도 규제 제외대상 비교 >

현 행	개 정 안
• 국채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⑥2)에 따른 채권(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채권) <신 설> <신 설>	• < 좌동 > • < 좌동 > • < 좌동 > • 지방채 •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증권

□ ① 채무증권 중 지방채와 일부 특수채는 국채나 통화안정증권과 동일한 위험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 산정시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¹⁸⁾ 은행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동일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② 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가 추가로 도입되어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의 위험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③ 유럽, 일본 등은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 대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두고 있어¹⁹⁾ 국내 은행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18) 【참고자료 1】 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참조

19) 유럽은 은행업과 증권업이 겸업화된 유니버설 बैं킹 시스템이므로 은행이 별다른 제약 없이 유가증권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일본은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투자규모에 제약이 없음. 미국은 은행의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채권의 경우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규제하고 있음 (감사원,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2015).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산의 위험가중치²⁰⁾]

국채, 통화안정증권, 지방채, 주택금융공사 MBS 등: 0%
공공기관 발행 채권 등(특수채): 정부 결손 보전 여부, 출자(출연) 비율, 세제상 지원 여부 등에 따라 0%~50% 적용
회사채 등: 표준신용등급에 따라 20~150%

주: 최고 신용등급 또는 원화 단위 채권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금융위원회(바젤Ⅲ,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를 토대로 작성)

□ 다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증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바젤Ⅲ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부의 결손 보전 여부, 출자(출연) 비율, 세제상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0%에서 50% 사이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의 공공기관이나 특수공공법인의 특수채 증권에 대해서만 국채나 통화안정증권과 동일한 위험가중치(0%)를 적용하고 있음.

2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르면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되며, 신용위험가중자산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는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 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저 금액에 위험가중치(해당 익스포저의 위험 정도)를 곱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국채와 동일한 위험가중치(0%)를 적용하는 국내 공공기관**

구 분	실제 해당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석탄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주: 위험가중치 0% 적용 공공기관 목록은 【참고자료 2】 참조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모든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를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손 발생시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지는 일부 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만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법」 제38조제1호라목²¹⁾에 따라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중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국채 등과 동일한 위험가중치(0%)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MBS는 ‘자기신탁’ 설정을 통해 신탁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주택금융공사가 MBS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²²⁾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21)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 나. 지분증권.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② (생략)

- ③ 법 제38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가 이를 보전하여 공사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MBS는 주택금융공사가 확정된 배당수익과 원본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수채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²³⁾).

- 또한, MBS는 안전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²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며, 신탁을 통해 은행이나 발행자인 주택금융공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고 신탁재산인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MBS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이 추가로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특수채보다 위험이 낮음.

□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변화된 규제 현황과 유가증권별 특성에 맞게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부 채무증권 외에 특정 수익증권(MBS)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34조(지급보증) ①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2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1조(채무증권형 수익증권의 특례) 수익증권 중 이익금의 분배 방법, 투자원본의 보장 여부 등이 채무증권과 유사한 수익증권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편의 채무증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 LTV 70%, DTI 60% 이내 및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참고자료 1】 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익스포저의 종류		위험가중치
중앙정부, 중앙은행 익스포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OECD 국 가신용도등급에 따라 0~ 150%* →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위험가중치 0% 적용 (중앙정부, 중앙은행, 국내 지자체 원화기준 채권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위험 가중치 0%)
국내 지방자치단체 익스포저		
국내 공공기관 익스포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 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중앙정부 신용등급 또는 OECD 국가신용도등급에 따라 20%~150%
	- 「공공기관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적용 기관 -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 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조합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은행,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 등을 받은 증권회사의 익스포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인 경우

표준신용등급	AAA~AA-	A+~A-	BBB+~BBB-	BB+~B-	B-미만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OECD 국가신용도등급인 경우

OECD 국가신용도등급	0~1	2	3	4~6	7	무등급
위험가중치	0%	20%	50%	100%	150%	100%

자료: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중 제3절 위험가중치 참조

【참고자료 2】 위험가중치 0% 적용 공공기관

기관명	설립 근거	구분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결손보전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결손보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결손보전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결손보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결손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결손보전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결손보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결손보전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결손보전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대전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전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제주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지자체 결손보전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결손보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결손보전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3조	결손보전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결손보전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결손보전(교육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결손보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 37조	결손보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결손보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정부출연, 결손보전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정부출연, 결손보전
세종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정부출연, 결손보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결손보전

문 의 처

02)6788-5104